

2016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송의고등학교

<목 차>

I. 학생 생활 규정	-----	1	
제1장 : 총칙	제2장 : 학생선도위원회	제3장 : 징계	
II. 학교 생활 수칙	-----	5	
제1장 : 학생지도	제2장 : 교내 · 외생활	제3장 : 용의 및 복장	
제4장 : 출결규정	제5장 : 현장실습	제6장 : 정보통신	
제7장 : 학생자치법정			
III. 시	상-----	17	
IV. 학	생	회-----	19
V. 규정제·개정절차	-----	24	
VI. 의뢰서	양식-----	26	

I. 학생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숭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6.7. 대통령령 제22955호]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4조 【학생선도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 ③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기획부장, 학생자치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자치부 소속 교사,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학교 상황에 맞게 위원의 구성을 변경 할 수 있다.
- ④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생선도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생활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년부장이 학생자치부장에게 개회를 건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담임교사 또는 학년부장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다.

제6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7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학생자치법정과 상호 보완하여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 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제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및 정신교육 : 1일~5일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1일~10일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일~10일 기간으로 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징계의 마지막 단계)
- ※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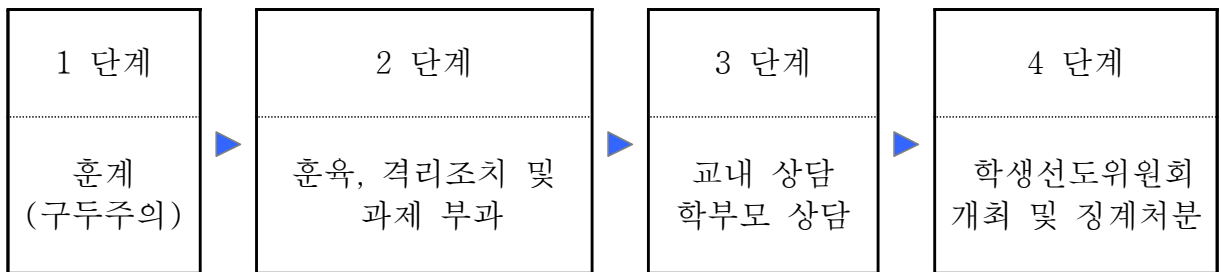
제9조 【징계 내용】

- ① 학교 내 봉사 및 정신교육 : 교사 교육활동 보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방

과후 잔류,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금연일지, 생활지도 프로그램일지 등)작성, 복도에 서 있기 등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학생자치부에서 심의한 후 해당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 : 사회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 : 금란 교실, 돈보스코 학교 또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⑤ 전 학 : 학생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전학 처분 할 수 있다.
- ⑥ 퇴학처분 : 학생이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퇴학 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절차】



제11조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강제전학 처분 시 시교육청에 고등학교 전·입학 업무심사판별위원회(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 교육환경전환을 심의 요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③ 학생선도위원회 처분 가운데 ‘퇴학’ 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 학교안전생활과-6154. 2013.6.7.)
- ④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의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학교내 외 봉 사 및 정신교 육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
예절	①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 또는 정당한 지시 거부	●	●	●	●	●	●
	②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준법	①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②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③ 경찰서에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			
	④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⑤ 인장 및 재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⑥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⑦ 학교장 허락 없이 승용차, 오토바이, 택시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내로 진입하는 학생	●	●				
	⑧ 금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절도한 학생	●	●	●	●	●	●
	⑨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수업 및 시험	①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②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	●	●			
근태	①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②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③ 무단 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		●	●	●	●	●
약물	① 약물 또는 음주행위가 적발된 학생	●	●	●			
	② 약물 또는 음주행위가 3회 이상 상습적인 학생	●	●	●	●	●	
	③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흡연	① 교내·외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1~2회)	●	●	●	●		
	② 흡연행위가 3회 적발된 학생	●	●	●	●	●	
	③ 흡연행위가 4회 이상 적발된 학생	●	●	●	●	●	●
	④ 교실 내, 길거리, 공공의 장소 등에서 흡연한 학생	●	●	●	●	●	
퇴폐 행위	① 도박을 한 학생	●	●				
	②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③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④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소지, 담독한 학생	●					
	⑤ 불량 영화를 시청한 학생	●	●				
	⑥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집단 행위	① 불법집회 또는 씨클에 참석했거나 가입한 학생	●	●				
	②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③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④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기타	①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지도를 받은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	●
	② 본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다	●	●	●	●	●	●

흡연행위 1회 적발-교내봉사활동(1일~3일)을 실시한다.

2회 적발-교내봉사활동(3일~5일)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금연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3회 적발-출석정지5일(결석처리). 출석정지기간동안 관련병원이나 상담기관에 의뢰하여 금연교육을 이수해야한다.

4회 적발-전학 또는 퇴학

※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봉사(1,2회 적발)를 실시하며 3회 이상 적발 시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또한 교내봉사,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학생의 수업이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II. 학교 생활 수칙

제1장 학생지도

제15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6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진학상담실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17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18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 할 수 있다.

제2장 교내 · 외생활

제1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유물】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목적에 위배되는 물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의 제보를 활용할 수도 있

다.

- 1) 담임교사 ·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학생자치부교사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시 ·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자치부교사,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24조 【행위예방】

학생들이 학교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과목은 0점 처리한다.

- ①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②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
- ③ 교과서나 유인물 및 쪽지를 보는 행위.
- ④ 각종 통신 기구(핸드폰, 다기능계산기 등)를 휴대하는 행위.
(단, 반드시 시험장에서 통신기구는 휴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1), 2), 3), 4)항 이외의 어떠한 유사한 행동으로 감독교사로 하여금 부정행위로 의심되게 하는 행위.

제25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스토킹이나 성희롱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도움을 청하고 싶은 교사 등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자치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 【금연지도】

학교는 학생 자신의 건강과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금연지도를 한다.

- ① 학생은 절대 금연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흡연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③ 수업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무단외출은 흡연행위로 간주하여 연계 지도한다.
- ④ 식사시간 중 무단 외출을 하여 PC방 등의 출입을 할 경우 흡연 행위로 간주하여 지도한다.

제29조 【기타 교내생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교내 생활지도를 한다.

- ① 실내·외화 착용지도
 - 1) 실내에서는 가급적 실내화 착용을 권장한다.
(단, 전문과 실습시간 등 필요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할 수 있다.)
 - 2) 급식장에서도 실내화를 착용한다.

(전 시간 수업이 체육이나 실습시간은 예외임)

3) 학교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실외화(학교에서 인정하는 신발)를 착용한다.

② 등·하교 지도

1) 학생은 절대 승용차, 택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등·하교 할수 없다.

(단,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복시까지 예외로 한다.)

2) 반드시 학생증을 패용하고 책가방을 소지해야 한다.

3) 규칙 위반시 학생자치부 선생님들이나 학생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송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 예절(인사)지도

1) 반드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손님을 만나게 될 때는 공손하고 바르게 인사를 한다.

2)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님이나 외부손님들의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하여 안내하고, 목적지까지 예의바르게 안내하도록 한다.

④ 질서지도

1) 실내·외 에서는 침을 뱉지 않도록 한다.

2) 매점을 이용 할 때는 음식물을 반드시 매점 주위에서 해결하여 뒤처리를 깨끗이 하고, 음식물을 실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3) 학생은 교무실이나 특별실(직업보도실, 정보처리실, 성적처리실, 과학실,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보건실, 실습장 교사실 등)을 출입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4) 학생은 화장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 학생은 A동 1층에 위치한 교사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남·여 공히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⑤ 급식소 지도

1) 반드시 학생증을 패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2) 급식담당교사가 학생증이 없는 학생의 급식시간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

(단, 학생증 재발급 신청 기간 중에는 담임교사의 재발급 확인증으로 학생증을 대체 할 수 있다.)

3) 자신이 사용한 급식 판이나 컵, 수저, 젓가락, 남은 음식물 등을 자신이 일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식사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0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한다.

제31조 【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갖고자 할 때
-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2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3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장 용의 및 복장

제34조 【용의 및 복장 규정】

- ① 두발 : 진한 염색, 진한 파마, 무스 젤리, 스프레이 등은 금한다.
 - 1) 남학생-단정한 머리를 규정으로 앞머리는 눈썹까지 옆머리는 귀의 2분의 1이 보이게 하고, 뒷머리는 깃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삭발은 금지한다)
 - 2) 여학생-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검정 생머리, 자연 갈색머리, 옅은 파마머리, 너무 화려한 가발을 제외하고는 기본 가발은 허용한다.
- ② 화장 : 무색의 스킨, 로션, 선크림, 약한 비비크림까지는 허용한다. 아이라인은 허용하되 눈을 넘으면 안 된다. 마스크라와 아이섀도우 등의 색조 화장품은 허용되지 않고, 입술은 연하게 하되 입술 보호를 위한 약품은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매니큐어는 허용하지 않고 투명의 손톱강화제는 허용한다.
- ③ 렌즈, 악세사리 : 컬러렌즈 사용 가능하고, 귀걸이는 한쪽 귀에 투명 귀걸이 1개까지 허용한다. 단, 귀걸이는 귓볼에만 하고 연골에 착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④ 교복 및 명찰
 - 1) 교복을 입을 때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학생증을 패용해야 한다.
 - 2) 교복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변형도 불허한다. 넥타이 착용은 학생 자율에 맡긴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남, 여학생 구분 없이 흰색, 회색, 검정색 계통의 외투 및 조끼는 허용한다. (단, 롱코트는 불허한다)

가. 남학생 : 바지통 7.5인치 이하의 쫄바지는 금한다.
(춘추복 착용 시 검정색계열의 조끼는 허용하고 니트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학생 : 기본적인 진한 검정색 스타킹과 레깅스만 허용한다. 치마는 주름을 기본으로 하고 길이는 허벅지의 4분의 3이상 가린다.

 - ㉠ 흰색 블라우스에 타이만 착용해야 한다.
 - ㉡ 양말 : 동복에는 검정 계열, 춘추복과 하복에는 흰색 계열을 신는다.
 - ㉢ 스타킹 및 타이즈(쫄바지) : 얇은 스타킹으로 안이 비치는 것이나 살색 스타킹은 허용하지 않는다.
 - ㉣ 폴 라 : 겨울철 폴라 착용 시 검정 계열과 곤색 계열만 허용한다.
- ⑤ 가 방 : 손에 들 수 있는 가방 또는 등에 메는 가방으로 교과서를 담을 수 있는 학생용 가방. (단, 미니가방, 악세사리 가방은 제외한다.)
- ⑥ 신발
 - 1) 남학생 : 운동화만 허용한다(원색계통의 운동화는 불허)
 - 2) 여학생 : 구두 굽이 5cm 미만인 단화만 허용하고, 운동화의 착용을 허용한다.
(단, 숙녀용 구두나 원색계열 신발은 불허)

제4장 출결 규정

제3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승낙을 받아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 ‘2010.4.15. 자퇴, 2011.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10.3.2 ~2010.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0.3.2 ~ 201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6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 ②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자

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7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3일)
- ④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2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37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3년간 결석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8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5장 현장실습

제39조 【현장실습 준수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2)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4)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 5)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40조 【학부모 협조사항】

-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6장 정보통신

제41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2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수업 중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에게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교육목적상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자치법정

제43조 【목적】

학교징계처리과정의 하나로서 징계를 교칙에 따른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벌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위반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운영원칙】

학생자치법정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건강한 학생지도 방법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 ②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지도를 통해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 ③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 지도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데 있다.
- ④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시킴으로써 교사지도 불응학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제45조 【운영방법 및 구성】

학생자치법정 운영 방법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학생들은 경미한 교사지도 불응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긍정적 지도란 <표 1>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처치 및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행동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도를 말한다.
- ③ 학생자치법정은 월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사정에 따라 학생자치부장이 변경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은 <표 2>와 같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학생자치법정에 의해 양형이 확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⑥ 긍정적 지도에 의한 학생의 자발적 반성 및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다.
- ⑦ 학생자치법정은 학생회 및 운영위원을 주로 하되 전문과와 보통과로 나누어 창·체 동아리로 운영하도록 한다.

<표1>

종류	내용
나의 다짐 쓰기	내가 위반한 사항이 무엇이며 위반하게 된 이유와 다시 선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스스로 써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선생님과 대화하기	지정된 선생님과 티타임을 갖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
캠페인 활동하기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사랑하며 인사하기 캠페인 등의 캠페인 참여
노작활동	학교 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5회 차(1회 차 1시간)이내 활동하기

<표2>

내용	보통과 구성	전문과 구성
판사	3인 학생회장 보통과 선도부장 담당지도교사	3인 학생부회장 전문과 선도부장 담당지도교사
검사	학년별 2인	학년별 2인
변호사	학년별 2인	학년별 2인
배심원	학년별 7인	학년별 7인
서기	1인	1인
법정경위	3인 (학생회운영위원)	3인 (학생회운영위원)

Ⅲ. 시 상

제46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학력부문 - 교과별 학업우수상
-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 ③ 근면부문 - 3년개근상, 1년개근상, 3년정근상
- ④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7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8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한다.

제49조 【학력부문】

학력상 : 매 학년말 학업우수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최우수학생에게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생년월일이 낮은 학생에게 시상한다.

제50조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③ 선행상 : 예절과 행실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봐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⑤ 기 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

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51조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③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2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3조 【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IV. 학생회

제1장 학생회 규정

제54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5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6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7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58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9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60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⑤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종교부 : 각종 종교 행사에 관한 업무

제61조 【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3조 【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
- 2) 사업계획
- 3) 예산편성 및 결산보
-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64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학생회장선거 규정

제66조 【회장단 선출】

- ① 전 회원이 참가하여 직선제로 선출한다.
- ② 회장단(회장-부회장)은 동반 후보로 하고, 선거 결과 최다 득표 조가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된다.

제67조 【후보자의 자격】

회장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학생으로 한다.

- ① 품행이 바르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 ②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③ 전 학년 출결사항이 정근이상인 학생(등록 전일까지)
- ④ 회원(재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8조 【선거권제한】

휴학 중이거나 징계중인 학생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9조 【선거 시기】

신임 회장단 선거는 전임 회장단 임기 만료 전 30일 이내, 즉 10월 2일부터 31일 이내에 한다.

제7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①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 1)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10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2) 후보로 등록된 회장, 부회장은 제외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1) 개회 및 의결 :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일시를 공고한다.
 - 3) 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한다.
- ④ 후보자 등록 절차

- 1) 회장, 부회장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후보자가 된다.
 - 2)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 공고 마감 익일부터 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1통, 생활기록부 사본1통, 회원50명 이상의 추천서와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3)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마감 후 1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 5) 입후보자는 특정 학과에 관계없으며 다만 특성화과와 보통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예를 들면 특성화과 회장 후보자이면 보통과 부회장 후보자이고, 보통과 회장 후보자이면 특성화과 부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도록 한다.)
 - 6) 담임교사는 입후보 희망학생에게 입후보자 자격요건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⑤ 투표와 개표
- 1)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 2) 지정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 좌석, 투표용지 교부, 기표장소 투표함의 위치, 참관인의 좌석을 배치한다.
 - 3)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관하고 지명된 선거관리위원 3명 이상이 개표한다.

제71조 【선거운동】

- 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교내에서 투표 전일(24:00)까지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피켓과 선거 벽보물에는 후보자 기호, 사진, 성명, 공약, 호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단, 피켓과 벽보의 크기와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금품수수, 명백한 흑색선전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등록과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 ⑤ 선거운동 기간일지라도 입후보자가 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2조 【소견 발표회】

- ①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발표를 할 수 있다.
- ③ 소견 발표와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 ④ 소견 발표자의 소견 발표 제한시간은 각 후보자마다 8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6분 이내로 한다.
- ⑤ 소견 발표자는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찬조 발표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각 입후보자의 추천자로 한다.
- ⑥ 학생회 회장·부회장 입후보자는 반드시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사유를 소견발표 2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소견 발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3조 【당선인 결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최다 득표한 1개조를 당선 조로 결정한다.
- ②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여 결정하며, 결선투표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 ③ 회장단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무투표 당선을 확정 공고한다.

제74조 【당선공고】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즉시 공고한다.

제75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학생회장이 명백한 학교생활규정을 위배하여 징계를 받거나 학교의 품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위를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⑤ 학생부회장이 명백한 학교생활규정을 위배하여 징계를 받거나 학교의 품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위를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6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말일까지(1년)로 한다.

V. 규정제·개정 절차

제77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9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0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3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4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0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1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일】 이 개정안은 2016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VI. 의뢰서 양식

학생선도위원회 심의의뢰서

훈육 및 훈계(회) ⇒ 담임교사 상담(회) ⇒ 학부모 상담(회)

()학년 ()과 ()반	성명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안명		가정통신문 발생횟수	()회	근태	무단결석 ()일 지각 및 결과 ()회
보호자 인적 사항					
성명		관계		비고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사안내용 및 경위(6하 원칙 의거. 사안 기록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하여 가능)					
201 년 월 일					
담임교사 (인) 의뢰교사 (인)					
담임교사 소견 및 의뢰교사 의견			학생 선도위원회 조치사항		

※ 첨부서류 :

승의고등학교 학생자치부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학년 학과 반	학년	과	반	담임교사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신청 사유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송 의 고 등 학 교
학생선도위원회위원장 귀하